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등

가. 보험종목의 명칭

더나은플러스 무배당 ABL유니버설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2101

나. 보험의 종류

1종 (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1형 (평준형)
	2형 (10년 후 체증형)
	3형 (15년 후 체증형)
2종 (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형)	1형 (평준형)
	2형 (10년 후 체증형)
	3형 (15년 후 체증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1) 1형(평준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종신	5년납	만 15세 ~ 67세	만 15세 ~ 70세	월납
	7년납	만 15세 ~ 65세	만 15세 ~ 70세	
	10년납	만 15세 ~ 62세	만 15세 ~ 68세	
	15년납	만 15세 ~ 58세	만 15세 ~ 64세	
	20년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61세	
	55세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0세	
	60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55세	
	65세납	만 15세 ~ 60세	만 15세 ~ 60세	
	70세납	만 15세 ~ 65세	만 15세 ~ 65세	
	75세납	만 15세 ~ 55세	만 15세 ~ 70세	
	80세납	만 15세 ~ 46세	만 15세 ~ 63세	

2) 2형(10년 후 체증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종신	5년납	만 15세 ~ 34세	만 15세 ~ 40세	월납
	7년납	만 15세 ~ 33세	만 15세 ~ 39세	
	10년납	만 15세 ~ 31세	만 15세 ~ 37세	
	15년납	만 15세 ~ 40세	만 15세 ~ 45세	
	20년납	만 15세 ~ 47세	만 15세 ~ 52세	
	55세납	만 15세 ~ 40세	만 15세 ~ 42세	
	60세납	만 15세 ~ 43세	만 15세 ~ 45세	
	65세납	만 15세 ~ 46세	만 15세 ~ 48세	
	70세납	만 15세 ~ 48세	만 15세 ~ 51세	
	75세납	만 15세 ~ 51세	만 15세 ~ 53세	
	80세납	만 15세 ~ 52세	만 15세 ~ 56세	

3) 3형(15년 후 체증형)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종신	5년납	만 15세 ~ 35세	만 15세 ~ 41세	월납
	7년납	만 15세 ~ 34세	만 15세 ~ 39세	
	10년납	만 15세 ~ 32세	만 15세 ~ 37세	
	15년납	만 15세 ~ 28세	만 15세 ~ 34세	
	20년납	만 15세 ~ 38세	만 15세 ~ 43세	
	55세납	만 15세 ~ 36세	만 15세 ~ 38세	
	60세납	만 15세 ~ 39세	만 15세 ~ 41세	
	65세납	만 15세 ~ 42세	만 15세 ~ 44세	
	70세납	만 15세 ~ 45세	만 15세 ~ 47세	
	75세납	만 15세 ~ 47세	만 15세 ~ 50세	
	80세납	만 15세 ~ 50세	만 15세 ~ 52세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 월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다. 보험료 납입한도

(1)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연간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기본보험료 × 12 × 300%)의 한도 내에서 정한다.

- (3)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1)’ 및 ‘(2)’의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한다.
- (4) ‘(2)’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고채수익률(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 (5)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1)’ 및 ‘(2)’의 한도를 적용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고액계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한다.

할인조건	할인금액
보험가입금액 1억원 미만 (다만, 9,6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없음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다만, 1억 9,7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3.0%
보험가입금액 2억원 이상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4.0%

나. ‘가’에 따라 고액계약 할인이 적용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후 매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월대체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7. 장기유지보너스 및 장기납입보너스에 관한 사항

가.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6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과 12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 각 해당시점에 ‘(2)’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다만, 장기유지보너스는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나.’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 (2) 장기유지보너스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에는 특약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으며, 추가납입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조건	장기유지보너스
6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	60회차 월계약해당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와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 중 작은 금액의 5.0%
120회차 월계약해당일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	120회차 월계약해당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와 보험료 납입기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 중 작은 금액의 5.0%

- (3) 피보험자가 120회차 월계약해당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나. 장기납입보너스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시점까지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납입보너스를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 1) 직전월의 월계약해당일 다음날부터 해당월의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

료가 납입된 계약

2)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가 모두 납입된 계약

(2) ‘(1)’에서 정한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적립하는 장기납입보너스는 주계약 기본보험료 1회 납입분의 5.0%를 말한다. 다만, 장기납입보너스는 ‘5. 보험료에 관한 사항’의 ‘나.’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8.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3개월분 이상(최대 35개월분까지)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한하여 선납이 가능하다.

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한다.

다.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는다.

9.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의 금액(이하 “연체보험료”라 한다)에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하 “연체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해지된 경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이상의 금액,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 배수

나. ‘가’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대체보험료 및 해당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을 공제한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한 이후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않는다.

10.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적용한다.

11.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이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 (1)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 (2)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한다.

라.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중도인출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한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된다.

마. ‘나’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12.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 × 국고채 가중치(β 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 회사채 가중치(β 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는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라) 국고채 가중치(β 1), 회사채 가중치(β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I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E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라)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의 변동성을 헛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배당보험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년 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로 한다.

사.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13.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

다.

다. 회사는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마.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14.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1)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 납입한 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2) 추가납입보험료는 수시추가납입보험료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된다.

(가)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한다.

(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하며, 매월 납입할 수 있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100% 이내로 한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월에 납입하기로 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납입하기로 한 날로 한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에

한해서 납입 가능하다.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된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 (1)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총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보험료로 보며,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다만,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납입하는 보험료는 기본보험료(특약이 포함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3) 월정기납입옵션
 - (가) 계약자는 월정기납입옵션을 선택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이하 ‘월정기납입보험료’라 한다)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의 두배로 설정해야 하며, 월정기납입보험료를 기본보험료로 본다. 월정기납입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한 이후에는 5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으

며, 월정기납입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본다.

(다) 계약자는 월정기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월정기납입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적용된다.

(라) 월정기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월정기납입옵션을 신청할 때 매월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한다. 다만, 해당 월에 납입하기로 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납입하기로 한 날로 한다.

(마)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하는 보험료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월정기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된다.

(바) 해당 시점의 월정기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월정기납입보험료를 납부할 때 미납입된 월정기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사) 갱신허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월정기납입옵션을 선택할 수 없다.

다. 중도인출로 ‘20.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에서 정한 기본사망보험금(이하 “기본사망보험금”이라 한다)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총액」 도달여부 및 연간납입한도와 상관없이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란 기본사망보험금이 다음의 금액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하며, 그 감소된 금액을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이라 한다.

(가) 1형(평준형)

보험가입금액

(나) 2형(10년 후 체증형)

구분	기본사망보험금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전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30년 경과시점 전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 부터 10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보 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계약일부터 30년 경과시점 ~ 종신까지	보험가입금액의 200%

(다) 3형(15년 후 체증형)

구분	기본사망보험금
계약일 ~ 계약일부터 15년 경과시점 전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계약일부터 15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35년 경과시점 전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 부터 15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보 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계약일부터 35년 경과시점 ~ 종신까지	보험가입금액의 200%

15.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 해지환급금 보증비용(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에 한하여 부가), 부가보험료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으로서 해당월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다만,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때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공제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납입면제보험료 포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

해지환급금 보증비용(1종(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에 한하여 부가), 부가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으로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계약관리비용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한다.

16.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 이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3년(36회 납입)이 지난 후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으로 정한다.

17.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8.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를 포함)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다. ‘나’의 ‘감액(또는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란 해당 감액(또는 인출)이 발생하기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나’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

19. 보험가입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다.
- 나.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가’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감액으로 변경되는 월대체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한다.
- 라.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20.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가. 「기본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계약자적립금의 101%」 중 가장 큰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나. ‘가’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시 해지환급금이 사망보험금 이상일 경우 해지환급금 해당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 다. ‘가’의 「기본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형별 및 경과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1) 1형(평준형)
보험가입금액
 - (2) 2형(10년 후 체증형)

구분	기본사망보험금
계약일 ~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전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계약일부터 10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30년 경과시점 전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 부터 10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보 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계약일부터 30년 경과시점 ~ 종신까지	보험가입금액의 200%

(3) 3형(15년 후 체증형)

구분	기본사망보험금
계약일 ~ 계약일부터 15년 경과시점 전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계약일부터 15년 경과시점 ~ 계약일부터 35년 경과시점 전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로 부터 15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보 험가입금액의 5%씩 체증한 금액
계약일부터 35년 경과시점 ~ 종신까지	보험가입금액의 200%

라. ‘다’ 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사망 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는 중도인출 전 기본사망보험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1. 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평가한다.

22. 기타 사항

가.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나. 무배당 일반종신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무배당 일반종신전환특약으로의 전환을 신청하고,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80세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일반종신전환특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 (2) 전환 후 무배당 일반종신전환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전환전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무배당 일반종신전환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한다. 다만, 무배당 일반종신전환특약은 가입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3) 무배당 일반종신전환특약으로 전환을 신청한 계약자는 계약이 전환되기 전에 언제든지 전환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에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다.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이하 “연금전환특약”이라 한다)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 (2)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3) 다만,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의 경우 ‘(2)’에도 불구하고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을 지급한다.

라. 보험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2)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

(3) 납입보험료 관련 사항(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보험료 납입한도 등)

마.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서상 서명을 통해 보험료 납입이 없더라도 계약유지를 위해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됨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사.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